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〉

■ 정성호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1261호)

2024. 11.

행 정 안 전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서 기 영

목 차

I. 제안경위	1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정성호의원 등 11인
2. 제 안 일 : 2024. 07. 01.
3. 회 부 일 : 2024. 07. 02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 중 하나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,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정하고 있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는 2017년 10월 삭제되었음.

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,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(안 제6조).

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실종아동등의 신고의무 대상자 중 하나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법률이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1)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제4호).

현행	개정안
제6조(신고의무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(이하 “경찰신고체계”라 한다)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	제6조(신고의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 <u>사회복지사업법</u> 」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	4. 「 <u>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</u> 」 제43조에-----
5.·6. (생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1)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제43조(사회복지전담공무원)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·도, 시·군·구, 읍·면·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,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,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.

④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의 신고 의무자의 하나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데, 동 조항은 이미 삭제(2017.10.24.)되었고,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음.²⁾

개정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법률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.

문 의 처
02)6788-5344

2) < 「사회복지사업법」 內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 삭제 경과 >

- '92년~'14년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규정(제14조)
- '14년: 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정
- '14년~'17년: 「사회복지사업법」(제14조) 및 「사회보장급여법」(제43조) 중복 규정
- '17년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규정 삭제